



2018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부 단체협약

전 문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교사노조연맹“이라한다)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 그리고 교사노조연맹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협약이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사노조연맹 간에 체결된 협약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시·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한 때에는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및 존중】

- ① 교육부는 본 협약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노조연맹과 협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 ② 교육부는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사노조연맹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 ①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 조합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경우 공가처리하고, 교육부가 실시하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출장 처리한다.

③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 조합원이 학생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간의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간의 정책협의회 참석
3. 대의원으로서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④ 교사노조연맹 조합원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내에 노사가 합의한 교육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노동조합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의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등 공가로 인정되는 노동조합활동 중에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 【조합 전임자】

①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의 대표자가 교사노조연맹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지명·요구한 자를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정하며, 전임자격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 전임자의 전임 기간 중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임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반 법령·규정을 정비한다.

제6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교사가 근무지를 이동하더라도 조합비 일괄공제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 【시설 편의 제공】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단위가맹노조에 중앙조직이 사용하는 전용 사무실 (약 100평 규모)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노조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



인상액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통상적 비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

제8조 【문서 열람 및 상호 통지】

①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해당 자료,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②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1. 교육부장관이 통지할 자료

가. 교사노조연맹이 요청할 때 각급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여건에 관련된 공문

나.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자료

2. 교사노조연맹이 통지할 자료

가. 규약의 변경사항

나. 교사노조연맹의 임원 현황

다. 교사노조연맹이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필요시)

제9조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단체교섭이 없는 기간에 단체협약 이행점검, 교육정책, 교육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협의는 반기별로 1회, 3시간 내외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협의에 의해 추가 개최한다.

2. 대표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1회는 교육부장관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협의 안건은 상호간에 1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제3장 임금 및 복지

제10조 【임금 및 수당】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현실화 또는 신설하도록 노력한다.

1. 담임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

2. 교직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

3. 보직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



4. 교직수당가산금(비교과교사 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
- ② 교육부는 국립학교 교사(경력 5년이상 경력자)의 교원연구비를 월 10만으로 인상 하도록 노력한다.
- ③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제11조 【출장비 등】

교육부는 교사의 출장시 강사수당을 교사가 직급이 없는 공무원임을 고려하여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표'에 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

제12조 【성과금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교직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장 근로시간·휴가·휴일

제13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실시】

교육부는 교원이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교원으로 근무하는 10년 근무마다 1회의 자율연수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근무조건

제14조 【교원의 연가사용권 보장】

교육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연가 승인 사유의 확대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6장 교권보호 및 생활지도 정상화

제15조 【교권보호】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포함되어 개정되도록 노력한다.

1.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



2.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교사 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4.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이 가능한 처벌규정 조항 신설

제16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①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주요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부는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 특별교육 시 개인 상담을 포함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한다.

제7장 교육환경 및 여건

제17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 ① 교육부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 절차와 과정 및 징계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부는 교육청, 학교, 사학재단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성적조작, 금품수수,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 ③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에 노력한다.

제18조 【해직교사 복직 및 복직교사의 명예회복】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복직교사의 해직기간 및 구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채용된 교사의 임용제외 기간에 대한 호봉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제8장 교원의 전문성 확보

제19조 【교원 연수】

- ①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등한 연수기회 부여하도록 권장한다.

제9장 학교도서관 정상화

제20조 【학교도서관 교육 환경 개선】

교육부는 학교예산 경상비(인건비 제외) 대비 도서구입비 확보 비율을 3%이상으로 권장한다.

제10장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 내실화

제21조 【전문상담교사의 업무정상화】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경력 환산 시, 전문상담교사자격증 및 상담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인 전문상담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공공 및 민간상담기관에서의 상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제11장 장애인교원 근무여건 개선

제22조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및 업무 지원】

①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하여 업무포탈 등의 웹 접근성을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업무포탈 등의 웹 접근성을 점검·개선한다.

2.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4세대 나이스(교육정보시스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교육부는 유치원 원장·원감 및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자격연수에서 장애인 교원을 포함하여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③ 교육부는 시각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등의 대체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국립특수교육원 등)을 지원하고, 동 자료를 신학년도 시작 이전에 해당 학생 및 교원에게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3조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이 치료 또는 재활을 위해 질병휴직을 신청할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제24조 【장애인교원 연수 접근성 보장】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교원연수기관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연수접근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제12장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 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 【협약갱신】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 쌍방은 본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이 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교육부는 당해년도에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유효기간내에 서면으로 교사노조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할 수 있다.
- ② 교사노조연맹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부는 이를 확인하고,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부는 연1회 교사노조연맹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점검사항을 선정하고 그 대상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교육부는 본 협약의



내용 중 교원의 보수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차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분기별 교직원단체의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안내한다.

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제5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가 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19. 7. 10.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 은 형

유 은 혜

김은형

유은혜



【단체협약이외의 합의사항】

<학교도서관 정상화>

1.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2항)에 따라 사서교사 증원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2.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수립에 교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3. ①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교육부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에 따라, 위 위원회 구성 시 학교도서관 현장의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 내실화>

4. ①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학교상담실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학교상담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조치한다.
 1.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위(Wee) 프로젝트 사업운영의 점검과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2. 교육부는 교육부내 전문상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①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상담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수 101명 이상의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①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전문상담교사 배치 계획을 마련한다.
6.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상담실 관련 정책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남북 교육 교류>

7.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



1.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평화통일 관련교재개발
 2.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3. 평화와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들 모임 및 연구활동 지원
8.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 및 해외 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
1. 다양한 분야의 교사교류
 2. 체험학습 및 문화탐방 등 학생교류

<기타>

9. ① 교육부는 현장 교사의 의견이 존중되고 학교 현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승진·임용제도를 포함한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부는 ①항의 실현을 위해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가칭)' 교사노조연맹이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부는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가칭)'에 교사노조연맹이 참가하도록 노력한다.